



김해시민 자전거 보험

피보험자 김해시민(주민등록 기준, 등록 외국인 포함) **자동가입 완료**

보장내용

구분	보장내용	보장금액	비고
자전거사고 사망	김해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경우(15세미만자 제외)	1,000만원	타 제도 중복 보상
자전거사고 후유장해	김해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3%~100%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	1,000만원 한도	
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	김해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 (최초 진단기준, 1회에 한해 지급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진단 4주(28일)이상 : 20만원 진단 5주(35일)이상 : 30만원 진단 6주(42일)이상 : 40만원 진단 7주(49일)이상 : 50만원 진단 8주(56일)이상 : 60만원 	
자전거사고 입원위로금	김해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고, 6일 이상 입원한 경우	20만원	타 제도 비례 보상
자전거사고 벌금	김해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(14세미만자 제외)	2,000만원 한도	
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	김해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,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(14세미만자 제외)	200만원 한도	
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	김해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(가족제외, 동승자 포함)을 사상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(14세미만자 제외)	피해자 1인당 3,000만원 한도	

- 보장제외 : 피보험자의 고의,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한 연습용, 시험용 자전거 사고는 지급 제한
- 보장기간 : 2024. 3. 22. ~ 2025. 3. 21. (최초가입 : 2021. 3. 22. / 매년 재가입)

자전거 사고

-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
 -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 탑승중에 일어난 사고
 -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
- 자전거** 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 및 제1의2호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

보험청구

- 보험사** DB손해보험(주) 컨소시엄
- 청구기간**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(보장기간 전 발생사고 포함)
- 청구서류** 보험금청구서, 주민등(초)본, 교통사고 관련서류, 통장사본, 초진진료치료 서류 등 장애진단서(후유장애)
- 문의처** DB손해보험 ☎02-475-8115 / 김해시 교통혁신과 ☎055-330-2723





자전거도로로 바르게 알고 이용해요



1 자전거 전용도로

자전거만 **통행**할 수 있도록 분리대, 경계석(境界石)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

주행방법 자전거 표지판, 노면표시 진행방향으로 통행



2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(분리형)

분리대, 경계석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

※ 자전거와 보행자는 각각 **지정된 통행로로만** 통행하여야 함

주행방법 자전거 표지판, 노면표시 진행방향으로 **일방통행**, 별도의 방향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**양방향 통행**



3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(비분리형)

자전거 **외에 보행자도 통행**할 수 있도록 분리대, 경계석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

※ 자전거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**차도 쪽**으로, 보행자는 차도에서 **먼 쪽**으로 통행

주행방법 자전거 표지판, 노면표시 진행방향으로 **일방통행**, 별도의 방향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**양방향 통행**



4 자전거 전용차로

차도의 **일정 부분**을 자전거만 **통행**하도록 차선(車線)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

주행방법 차량 진행방향과 동일하게 통행



5 자전거 우선도로

자동차의 일일 통행량이 2천대 미만인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**자전거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**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

주행방법 차량 접근에 유의하여 차로의 맨 우측차로로 차량 진행방향과 동일하게 통행



6 횡단보도 통행 시

- 횡단보도에 자전거횡단도가 있는 경우 자전거를 탄 상태로 자전거횡단도로 통행
- 자전거횡단도가 없거나 횡단보도를 이용 시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거나 들고 보행

